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“임산부”란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, 병원,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·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**제4조(적용범위)**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성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등으로 한다.

**제5조(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)**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신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.

**제6조(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)** ① 구청장은 「모자보건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신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신부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“임산부 자동차표지”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신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신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. 임신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신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**제7조(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)** 구청장은 임신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위반차량 조치)**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신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신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신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